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좋다.

학교 약사가 관리한다.

1) 생활면(절제)

- 가. 요 휴양 : 수업을 쉬어야 될 자
- 나. 요 경업 : 수업의 제한을 요하는 자.
- 다. 요 주의 : 수업을 거의 평상시와 같이 할 수 있는 자.
- 라. 건강 : 전적으로 평상시 생활을 해도 좋은 자.

2) 의료면(지도)

가. 요의료

의사에 대한 적절적인 의료 행위가 필요한 자

나. 요관찰

의사에 의한 적절적인 의료 행위를 요하지는 않으나 정기적인 의사의 관찰지도가 필요한 자.

다. 견 강

의사에 의한 직접 간접적인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라. 기타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은 물론 그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까지도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전하게 할 것이며, 교직원 중에 결핵환자가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저학년에 있어서의 투베르 쿨린 반응(T-test) 양성자를 통한 가정에 있어서의 결핵환자 유무 조사도 참고가 될 것이다.

6. 보건실(양호실)

보건실은 보통교실의 면적이면 적당하며 의무실과 휴양실 그리고 환경관리실로 구분한다.

한정하고 채광 통풍이 잘되는 곳을 택해서 설치한다. 보건실에는 신체검사, 신체계측, 진료용 기구, 약품, 안정대 등이 정비되어 있어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건실 옆에는 병자나 허약자가 수시 안정할 수 있는 휴양실이 부설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관리실에는 환경위생측정용 기구로서 간단한 수질 검사 시설, 의료용 약품, 위생약품, 환경위생교육 기재, 식품 분석표, 저울 등이 비치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환경위생측정용 기재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보건실의 의무실과 휴양실은 교의와 양호교사가 관리하며 환경관리실은

7. 기타 교실

과학실·도서실(관)·가사실·공작실·미술실·음악실·강당 등이 있고, 행의실·수영장·욕탕·식당·창고·취사장·기숙사 등도 각각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III. 學校給食

1. 학교급식 관계법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언 학교급식법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학교 급식규칙(문교부령 제401호, 1977.1.14 공포)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1) 학교급식의 목적

제 1조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하 "학교급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각급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친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학교급식의 운영 원칙

제 2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즉 영양식품은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에 비추어서 1식(점심) 열량 700cal, 단백질 25g(동물성 gr), 지방 gr, 칼슘 mg, 비타민 A I.U, B₁ mg, B₂ mg, C mg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의 종류와 내용

제 3조 ① 학교급식의 종류는 보호급식, 일반급식, 실험학교급식으로 하되, 보호급식은 요보호 아동을, 일반급식은 비용 차입 아동을, 실험학교급식은 실험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학교급식은 지역 실정과 급식대상

아동의 학년에 따라 완전급식과 보조급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완전급식은 주식과 부식을, 보조급식은 주식과 보조식 또는 주식, 보조식 중에 하나만을 제공하는 급식으로 하며 완전급식은 영양 권장량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1977년도 학교급식의 실시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u>급식종류</u>	<u>대상</u>	<u>회수</u>	<u>국고지원</u>
1. 보호급식			(천원)
○도서벽지	318,000명 (3학년이상)	주 2회이상 (연75회이상)	2,358,647
○일반지역	152,400명 (극빈아)	"	1,028,700
2. 실험학교급식			
○농촌형	27,000명 (자활급식) (55개교)	주 5회 (연180회)	145,800
○도시형	15,000명 (21개교)	주 3회	
3. 일반급식	회방자 787,000명 (14%)	주 2회이상 (연75회이상)	
계	1,299,400명 (23%)		3,533,147
	국고급식 497,400명 (9%)		

(4) 학교급식 계획서의 제출

제 4조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3월 말까지 익년도의 학교급식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급식품의 명세 및 실시 기준

제 5조 문교부장관은 매년도 말까지 익년도에 실시할 학교급식품 중 공동 조달할 가공식품의 명세가격 및 학교급식 실시기준을 정하여 교육감에게 통지한다.

(6) 급식 실시기관

제 6조 ① 교육감은 제 5조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 학교급식 실시지침 및 학교급식 종류별 대상인원수(학교급식비 예산과 당해 지역 설정을 감안한 인원수)를 매년 1월 말까지 시·군 교육장(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다.

② 시·군 교육장은 제 1항의 지침과 배정된 대상인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지역설정

에 적합한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7) 학교급식위원회

제 7조 ① 시·군 교육장은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규칙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의 내용
2. 급식대상자의 선정방법
3.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4.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

(8) 보조금 신청

제 8조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교부장관이 제 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매년도 말까지 결정통지한다.

(9) 보고 시·군 교육장은 학교급식 실시사항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분기초 10일까지 당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교육감은 그 사항을 다음 분기초 2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보건관리)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

2. 학교급식 관리

(1) 학교급식의 철학 확립

- 1)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아동의 성장 및 발육에 도움을 가지고 온다.
- 2) 급식을 통해서 영양교육을 할 수 있고, 이 영양에 대한 지식은 가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보급시킬 수 있다.
- 3) 식사를 통해 예절을 배우며 도시락 지침

으로 빚어지는 빈부 격차감을 없애고 더 나가서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 4) 학교급식은 영양교육의 일부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5) 급식을 통해서 국민 식생활의 개선을 위한 전천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
- 6) 급식을 통하여 지역사회(가정을 포함한) 식량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2) 급식관리상의 주의점

1) 일반적인 사항

- 가. 취사장, 조리대, 식당(교실), 취사용기, 조리용기, 식기를 위생적으로 설비하고 관리한다(실험급식학교).
- 나. 식품의 저장, 조리 및 식사 장소에는 쥐나 파리의 접근을 막는다(철망준비).
- 다. 식기 또는 기타 급식용 기구는 소독하기 쉽고 파손이 잘 안되는 것을 택한다.
- 라. 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부모, 기타 인사는 전염병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손에 전염병이 있어서는 절대로 급식관리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2) 급식취급상 주의할 점

- 가. 전체 아동에 대한 급식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평등감을 주도록 한다.
- 나. 급식은 급식시간에 학교에서 먹도록 하고 가정에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다. 급식장소(식당 또는 교실)는 특별히 식사 전에 정결을 기해야 한다.
- 라. 급식은 반드시 담임교사와 함께 하도록 한다.
- 마. 전염병(특히 식품인성)이 발생하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급식 취급을 일시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 바. 급식시간에 학교 급식대상이 아닌 학생이 지참하는 도시락 검사를 하여 영양지도를 한다.

사. 학교급식으로 불행히도 사고가 났을 때는 명정히 그 원인 규명에 노력하고 관계당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 취사장과 식품보관실

(1) 위치와 구조

학교급식을 위한 취사장과 식품보관실은 채광과 환기가 잘되고 급수 배수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취사장과 식품보관실은 특히 파리 등 곤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충망을 하고 쥐가 침입하지 않게 하여 실온과 습도가 높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거나 종사원이 출입시에 출입구를 통해서 먼지와 곤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출입구를 다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설비

취사장은 방수벽과 방수바닥으로 하여 항상 물로 씻어내릴 수 있는 재료로 하며 배수구를 완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취사대는 방수재료인 알미늄판,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호마이카 등을 깔아 청소가 용이하게 하며 물과 유기물의 침투 등으로 곰팡이, 세균 등의 번식이 없도록 한다.

수세대는 음식재료의 세척과 식기세척대로 나누어 취사장에는 세척한 재료 이외는 들어오지 않도록 재료세척대는 취사장 바깥에 둔다.

수세대 옆에는 식기들을 놓아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격자(格子)장을 두고 식기를 행주 등으로 셋지 않아도 되게 설계한다.

식기 등의 소독을 위해서 소독기를 두거나 자외선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품보관실에는 자외선 등을 설치하여 공기·용기 등의 살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식품 등이 일단 세균에 의해서 오염되면 실온($20\sim30^{\circ}\text{C}$)에서 급속히 균이 번식하여 독소를 형성하는 균도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식기, 기구들은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식중독의 예방법이다.

식품이나 기구의 소독에 소독기로서 가압증기

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지만 연료 손실이 많아서 자외선 등을 설비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자외선 등에는 가장 살균력이 강한 25~37A°의 광선을 방출하는 자외선 등을 설치하면 15W, 50cm의 거리에서 대장균, 장티푸스균, 포도상구균, 결핵균 등은 대체로 45~60초내에 멸살된다. 따라서 식품보관실이나 취사실에는 넓이에 알맞는 수의 자외선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식품 오염과 소독에 효과적이다. 취사장에는 반드시 냉장고를 두어 식품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 개의실과 별소를 두어 종사원이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모자 웃을 갈아입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위생관리

식품재료나 조리식품은 항상, 변질, 부패된 것이 없는가를 조사한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한 식품의 일부를 냉장고에 최소한 2일간 보관하여 겸사 참고품으로 한다. 식품의 변질 여부를 감식하는 방법은 가능적인 방법도 있으나 자외선 겸사기를 사용하거나 화학적·세균학적 겸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취사장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피부질환, 인후두염, 기타 전염병의 유무를 항상 조사하고 본인이 그러한 질병이 있을 때에는 식품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IV. 學校 健康教育

1. 건강교육의 목표

(1) 건강지식의 전달 및 증진

건강에 대한 기본지식 즉 신체의 기능, 정신 위생, 건강에 필요한 요소, 개인 가정 및 사회의 건강 유지와 증진 등과 더욱 친보적인 건강지식을 전달한다.

(2) 태도의 개선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 이를 지키려고 생각하고 느끼고 건강생활의 실천에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3) 건강행동의 실천

건강지식과 태도에 이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습관이 조성되어 건강 영역의 책임완수로 건강생활을 풍부히 할 수 있다. 위생적 습관, 정서의 안정, 충분한 영양, 건강을 위한 휴양과 생활계획, 의료시설의 이용방법, 전염병 예방, 지역사회 보전 등에 목표를 둔 건강생활을 한다.

2. 건강교육의 계획

(1) 건강교육의 계획은 전체 학교생활의 교육과 정착성에서 그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

(2) 건강교육 계획 수립에는 전직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한다.

(4) 지역사회와의 논의하여 그 지원과 협조를 구한다.

(5) 건강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체 직원이 참여하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6) 계획은 실천에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7)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특히 교사·양호교사회의·직원회의·사례연구회의·보건위원회의를 이용하는 이외에 비공식 수시 교육에 역점을 둔다.

3. 건강교육의 추진

(1) 체밀한 계획과 준비: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을 준비한다.

(2) 방법 및 매체의 선택 및 사전 점검

(3) 반복된 사전 연습

(4) 교사로서의 성의·사랑·태도 및 정신으로 교육 실시에 임한다.

(5) 실시 후 평가를 하여 재계획에 참고로 한다.

4. 건강교육 내용

(1) 국민학교의 교육내용(1973년 개정)

1) 4학년

가. 눈, 귀, 이의 질병과 예방

(가) 시력장애, 안질의 예방 (나) 청력, 중이염, 비염, 폐도선염의 예방 (다) 총